## 신주 발행 공고

당사는 상법 제 416 조에 의거, 2021 년 4월 21 일 개최한 최초 이사회 및 2021 년 6월 2일 (정정)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- 1. 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주식 38,000,000 주(1 주당 액면가액 500 원)
- 2. 신주의 발행방법: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
- 3. 신주의 발행가액: 할인율을 25 %로 하여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 165 조의 6(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) 및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제 5-15 조의 2(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)에 의거하여,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, 청약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..
- 신주의 배정기준일(주주확정일): 2021 년 6월 21일
- 5. 신주의 배정방법:
  - 가. 구주주 청약: 신주배정기준일 18:00 현재,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(이하 "구주주"라 함)에게 본 주식을 1 주당 0.4860870253 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(단, 1 주 미만은 절사함)으로 하고,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. 단,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 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- 나. 초과 청약: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, 실권주를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가 초과청약(초과청약비율: 배정 신주 1 주당 0.2 주)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,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.(단,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% 배정)
  - 다.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,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제 9 조 제 2 항 제 3 호 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%를 배정하고,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제 9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(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 년 6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)에 공모주식의 30%를 배정합니다. 나머지 65%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.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%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%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%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. 다만,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,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
  - 라. 일반공모 청약: 상기 구주주청약,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유진투자증권㈜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 하되,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.
  - 마. 상기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, 초과 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유진투자증권㈜가 일반에게 공모하되, 일반청약자 및 기 관투자자(집합투자업자 포함)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.
  - 바.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 사 6 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 소화되도록 한다.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,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 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.
- 사. 일반공모 청약 결과,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.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유진투자증권㈜ 가 전량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.
- 6. 청약일
  - 가. 구주주: 2021 년 7월 22 일부터 2021 년 7월 23 일까지
  - 나. 일반공모: 2021 년 7월 27일부터 2021년 7월 28일까지
- 7. 주금납입일: 2021 년 7월 30일
- 8.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
  - 가.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
  - 나. 신주인수권증서는 일괄예탁 방식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7월 13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임.
  - 다.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㈜로 함.
  - 라.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,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- 9. 청약증거금: 1 주당 발행가액 전액
- 10. 청약장소:
  - 가. 구주주 중 일반주주(기존 '실질주주'): 위탁증권사 및 유진투자증권㈜ 본・지점
  - 나.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(기존 '명부주주'): 유진투자증권㈜ 본·지점
  - 다. 일반공모 청약자: 유진투자증권㈜ 본·지점
- 11. 주금납입처: 부산은행 용호동지점
- 12. 배당기산일: 2021 년 1 월 1 일
- 13. 기타사항
  - 가.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.
  - 나. 상기사항 포함하여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  - 다. 본 신주발행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의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## 신주발행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
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13 조에 의거,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

- 다 음 -

- 1. 신주배정기준일(주주확정일): 2021 년 6월 21일
- 2. 명의개서 정지기간: 2021 년 6월 22 일부터 2021 년 6월 24 일까지

2021 년 6월 2일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 주식회사 피에이치씨 대표이사 최 인 화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